

2022 사업연도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3년 3월 10일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지 은



목 차

제 1 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0
1. 지배구조 일반	10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0
나. 지배구조 현황	11
1) 조직도	11
2) 지배구조의 특징	11
3) 지배구조 현황(요약/2022.12.31 기준)	12
다. 관련 규정	13
2. 이사회.....	14
가. 역할(권한과 책임)	14
1) 총괄	14
2) 구체적 역할.....	14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14
나) 정관 변경	15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1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15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15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16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17
아) 기타	17
나. 구성(이사)	17
1) 총괄	17
2) 구성원(2022. 12. 31. 기준)	18
3) 주요경력.....	19
다. 활동내역	19
1) 활동내역 개요	19
2) 회의 개최내역	20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25

1) 이사회 평가.....	25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26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26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8
가. 역할(권한과 책임)	28
나. 구성	29
다. 선임기준	29
1) 후보 자격요건	29
2) 후보 추천 절차.....	29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30
라. 활동내역 및 평가	30
1) 활동내역 개요	30
2) 회의 개최내역	30
3) 평가	31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32
1) 대표이사 후보	32
2) 대표집행위원 후보.....	32
3) 감사위원 후보	32
가) 후보자 인적사항	32
나) 후보 제안자.....	34
다) 후보자 추천 사유	35
라) 자격충족 여부	36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36
4) 사외이사 후보	37
가) 후보자 인적사항	37
나) 후보 제안자.....	40
다) 후보자 추천 사유	41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42
마) 자격충족 여부	42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45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45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46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47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49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49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49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50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50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 일시, 안건내용	50
가) 이사회	50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50
다) 감사위원회	50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50
마) 보수위원회	50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51
가) 사외이사 최운열	51
나) 사외이사 박병원	51
다) 사외이사 윤세리	51
라) 사외이사 배보경	51
마) 요약	52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52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53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53
1) 사외이사 최운열	53
가) 소극적 자격요건	53
나) 적극적 자격요건	54
다) 요약	54
2) 사외이사 박병원	55
가) 소극적 자격요건	55
나) 적극적 자격요건	55
다) 요약	56
3) 사외이사 윤세리	56
가) 소극적 자격요건	56

나) 적극적 자격요건	57
다) 요약	57
4) 사외이사 배보경	58
가) 소극적 자격요건	58
나) 적극적 자격요건	58
다) 요약	59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59
바. 사외이사 평가	60
1) 평가개요	60
2) 내부평가	60
가) 내부평가 개요	60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60
3) 외부평가	61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61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61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61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62
1) 사외이사 최운열	62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6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2
2) 사외이사 박병원	62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62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2
3) 사외이사 윤세리	63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6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3
4) 사외이사 배보경	63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63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63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64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2.12.31. 기준)	64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65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65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65
1) 일반.....	65
2) 비상계획.....	66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66
1) 소극적 요건.....	66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66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67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67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67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67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지침.....	67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68
3) 후보군 현황.....	68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68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69
6. 감사위원회.....	70
가. 역할(권한과 책무)	70
1) 총괄.....	70
2) 구체적 역할.....	70
가) 이사 및 집행위원의 업무집행 감독.....	70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70
다) 최고감사책임자에 관한 사항.....	71
라) 재무제표 검토 등	71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72
1) 총괄.....	72
2) 구성원.....	7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2
1) 활동내역 및 평가.....	72
2) 회의 개최내역.....	73
3) 평가.....	75

라. 감사보조조직 등	75
1) 설치 현황	75
2) 연간감사활동	76
3) 감사위원회 보고 내역	76
7. 리스크관리위원회	77
가. 역할(권한과 책무)	77
1) 총괄	77
2) 구체적 역할	77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77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77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77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78
마) 기타	78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78
1) 총괄	78
2) 구성원	7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79
1) 활동내역 및 평가	79
2) 회의 개최내역	79
3) 평가	81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83
제 2 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84
1. 보수위원회	84
가. 총괄	84
나. 구성	84
1) 총괄	84
2) 구성원	85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 현황(은행에 한함)	85
다. 권한과 책임	86
1) 총괄	86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6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6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86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87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87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 평 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87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88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88
10) 기타	88
라. 활동내역 및 평가	88
1) 의사결정 절차	88
2) 활동내역 개요	89
3) 회의 개최내역	89
4) 평가	90
2. 보수체계	91
가. 주요사항	91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91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91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91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91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91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91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92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92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92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92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92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92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93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93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93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93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93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93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93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94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94
나. 보수 세부사항	94
1) 임직원 총보수	94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94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95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5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95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6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96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96
6) 이연보수의 조정	97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97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97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97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97
[첨부 1]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정관	99
[첨부 2]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119
[첨부 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129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적인 지배구조는 구성원의 전문성 및 관점의 다양화를 통해, 투명한 지배구조는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각각 수립·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구성원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의 집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이사회규정 제10조).

위와 같은 이사회는 경영진 견제기능이 운영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유착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이사회는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22년말 기준 이사 총 7명 중 사외이사 4명)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견제장치로 그 임기를 연속하여 6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와 장치를 통해 당사는 이사회·경영진·사외이사 모두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도록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가 특정한 공통의 배경을 갖거나 특정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도록,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하여 이사 상호간 전문성이 최대한 융합되고 부족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처리 기준·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개를 위해 정관,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같이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내역 등 주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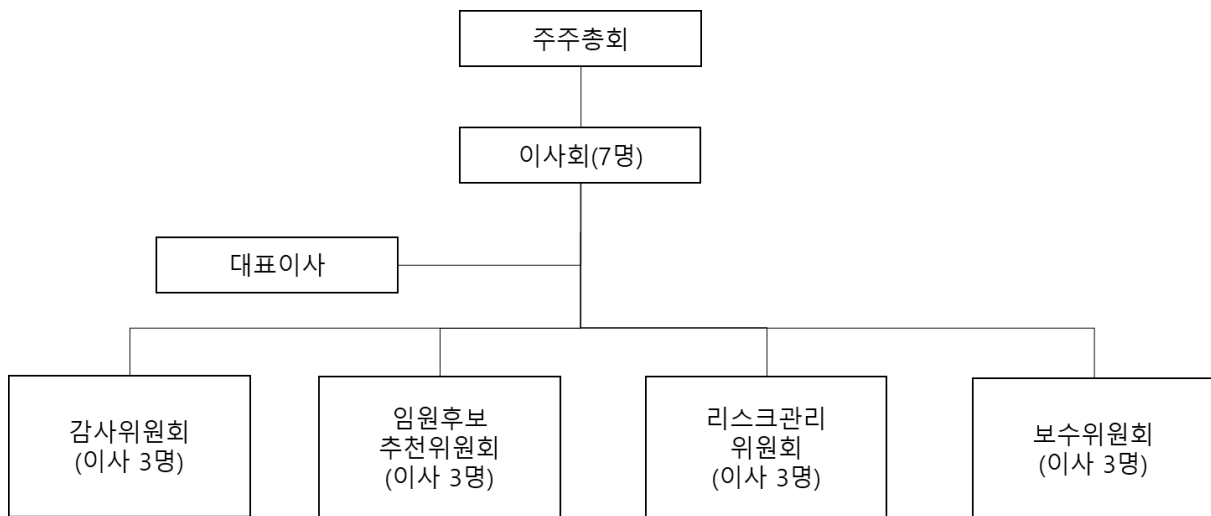
구체적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사 홈페이지 : www.lina.co.kr
-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pub.insure.or.kr

당사는 관련 법규 등에 기반하여 지배구조 원칙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로 하여금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강화 수행하도록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의 과반수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3조). 당사의 22년 12월말 현재 사외이사의 수와 비율은 4명, 57.14%입니다.

당사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의 총 4개의 이사회 내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개선하기 위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감사 및 개선방안 제시, 외부감사인 선·해임의 승인,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추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각 대상 별로 회사 지배구조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별 특성에 맞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감독,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각종 위험 한도의 설정 및 한도 초과의 승인 등 리스크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보수위원회는 성과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 구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보수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보수체계의 설계·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심의합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2022.12.31 기준)

내부기관	주요역할	구성 (사외이사 수 /구성원 수)	의장 (이름/상임 · 사외 · 비상임 여부)	관련 규정
이사회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	4/7	벤자민 홍/상임	정관 제24조, 제28조, 제29조~33조 이사회 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사외이사·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 추천	2/3	배보경/사외	정관 제24조, 제33조의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감사위원회	내부통제	3/3	최운열/사외	정관 제33조의3, 제33조의7, 제33조의8 감사위원회규정
리크스관리 위원회	리스크 감독	2/3	윤세리/사외	정관 제33조의3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보수위원회	경영진 성과 보상제도 운영	2/3	박병원/사외	정관 제33조의3 보수위원회 규정

다. 관련 규정

- [첨부 1]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정관
- [첨부 2]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 [첨부 3]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지속가능경영의 근간인 책임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방침과 업무집행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한편, 통제기구로서 경영진의 직무 집행을 감독함으로써 경영판단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에는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리스크관리 능력을 갖춘 사외이사들이 포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을 수립 및 평가합니다 (정관 제32조의2, 이사회규정 제10조).

구체적 수립·평가에 필요한 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이에 따라 2023년 경영목표·전략은 2022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습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및 의결합니다(정관 제32조의2, 이사회규정 제10조). 2022년 이사회는 정관 변경안 심의 및 결의건은 없었습니다.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포함)을 심의·의결합니다(정관 제32조의2, 이사회규정 제10조).

이 경우 예산을 경영목표·전략과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며, 구체적인 실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최종 승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산안 및 재무제표를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아 래 -

- 당기순이익 : 3,220억원

- 총자산 : 5조 5,635억원

※ 2022년 배당은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하였음(1,850억원)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 양수도에 대하여 심의·의결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경영상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를 심의·의결하고,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고 받고 있습니다(정관 제32조의2, 이사회규정 제10조).

2022 사업연도에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내역은 없었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조직과 임직원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 체제,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령 및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개정 또는 변경은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며, 현행 내부통제기준은 2021. 3. 31.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에 당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업무를 위임 받은 준법감시인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는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두고, 회사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효율적 관리감독, 정책수립 등 회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위험관리기준 및 동 기준 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관리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 승인에 관한 사항, 위기상황분석결과 보고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자산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에 관한 사항, 재보험 운영 전략 설정,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및 전략적 자산배분(SAA)수립,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합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의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의 적정성을 2022년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점검하고,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관리 등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당사의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 선임,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 정기 주주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등을 승인하여 상법에서 정하는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는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을 위하여 상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상의 기준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일상감시제도를 통하여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를 파악하고 평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해상충 행위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규정은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구성(이사)

1) 총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에 사외이사를 3명 이상,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의 이사 총원 수는 정관에 의해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하고 있습니다(정관 제23조).

2022. 12. 31. 현재 기준 이사회 구성원은 7명으로 기타 비상무이사 1명, 사내이사 2명 및 사외이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현 사외이사 4인(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이 재선임되었으며, 2022년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Jason D. Sadler이사가 사임하고 Bryce Leslie Johns이사가 회사의 기타 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되었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낙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는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습니다(정관 제25조).

이사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로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이사가 된 후에 결격요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언론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17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 제3조).

이사회 의장으로는 당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벤자민 홍 사내이사가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아 2022년 9월 이사회에서 연임하여 현재(2022. 12. 31. 기준)까지 재직 중입니다.

2) 구성원(2022. 12. 31. 기준)

성명	구분	직위	최초선임일/임기만료일 (재임기간)	담당 위원회
벤자민 홍	사내	이사회 의장	2010.11.22/2020.12.31 (121개월) 2020.12.31/2024.10.31 (24개월)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Bryce Leslie Johns	비상임	기타 비상무이사	2022.07.01/2023.06.30 (6개월)	-
조지은	사내	대표이사	2019.11.01/2020.12.31 (13개월) 2020.12.31/2024.10.31 (24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최운열	사외	선임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장	2021.03.31/20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박병원	사외	사외이사, 보수위원회 위원장	2021.03.31/20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윤세리	사외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021.03.31/20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배보경	사외	사외이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2021.03.31/20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보수위원회

3) 주요경력

성명	주요경력
벤자민 홍	- 前 라이나생명 CEO - 現 라이나생명 이사회 의장
Bryce Leslie Johns	President of Chubb Limited
조지은	- 前 라이나생명 Operation부문장 - 前 라이나생명 총괄 부사장 - 現 라이나생명 CEO
최운열	- 前 서강대학교 교수, 부총장 - 前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前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前 대한민국 국회의원(20대)
박병원	- 前 재정경제부 차관 -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前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세리	- 前 검사 - 前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 & Ko) 변호사 - 前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 변호사 - 現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
배보경	- 前 KAIST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 - 前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 現 고려대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22사업년도에는 총 6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85.7%입니다. 사외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100%입니다. 사외이사들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로 안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사회 개최 전 이사회 의안을 사전에 공유하여 이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해당 임원의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이사회에서는 의결 안건 31건 및 보고 안건 27건 등 총 58건의 안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2년도 제1차 이사회(정기) : 2022년 2월 15일 (10:00)

[안건통지일 : 2022년 2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Jason D.Sadler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1 회계연도 4 분기 주요업무집행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1 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2021 년 감사활동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		특이사항 없음							
마. 2021 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바. 내부통제체계 및 운영실태 점검 보고		특이사항 없음							
사. 보험금 지급 관련 소제기 현황 보고		특이사항 없음							
아. 이사회 내 위원회 처리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자.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실태 자체점검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차. 자산 무상양도 등의 적정성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카. 선임계리사 검증의견 보고		특이사항 없음							
타.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파. 2022 년 가계대출 관리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정기주주총회 안건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준법감시인 선임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계약자 배당 기준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Jason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나) 2022년도 제2차 이사회(임시) : 2022년 3월 31일 (15:00)

[안전통지일 : 2022년 3월 2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Jason D.Sadler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신규사업 및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이사의 겸직 승인(안)	의결권 제한 ^{주)}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안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 Jason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다) 2022년도 제3차 이사회(정기) : 2022년 6월 27일 (10:30)

[안건통지일 : 2022년 6월 20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Jason D.Sadler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회계연도 1 분기 주요업무집행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처리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임시주주총회 개최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임시주주총회 안건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선임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대주주와의 주식 양도거래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2022년도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정책 및 연간 계획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Jason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다) 2022년도 제4차 이사회(정기) : 2022년 9월 28일 (12:55)

[안건통지일 : 2022년 9월 21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Bryce Johns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회계연도 2 분기 주요업무집행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처리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IFRS17 도입 준비 경과 및 결산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주주 거래 변동 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주주 거래 보고	특이사항 없음
바.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안)	의결권 제한주)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선임사외이사 선임 승인(안)	찬성	-	찬성	의결권 제한주)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IFRS17 전환 회계정책(재보험 전체 공정가치법 적용)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라이나금융서비스 임대차계약 변경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안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 Bryce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다) 2022년도 제5차 이사회(임시) : 2022년 10월 24일 (14:05)

[안전통지일 : 2022년 10월 1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Bryce Johns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라이나금융서비스와의 전산장비 자산 이전 양수도 계약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Bryce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다) 2022년도 제6차 이사회(정기) : 2022년 12월 16일 (11:00)

[안전통지일 : 2022년 12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벤자민 홍	Bryce Johns	조지은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불참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회계연도 3 분기 주요업무집행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이사회 내 위원회 처리사항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보고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내역 보고(포괄 승인 내역 보고)		특이사항 없음							
바.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변경 내역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중간 배당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3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주요예산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라이나 전성기 재단 기부금 출연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내부통제기준 개정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추진계획 일부 변경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사. 임원 복무 및 보수규정(비등기임원) 개정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승인(안)									
아-1. 직장 어린이집 관계사(라이나원) 이용 계약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2. 라이나타워 17층 인테리어 공사계약 이관의 건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3. 라이나원 사무공간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4. 라이나원 TM센터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5. 라이나코리아 임대차 계약 갱신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6. 라이나원과의 전자구매시스템 서비스 이용계약 변경사항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7. ACE손해보험과의 제휴 광고 계약 체결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8. ACE손해보험과의 디지털 보험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9. CDM(처브다이렉트마케팅) 보험대리점계약 체결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10. 라이나원 보험대리점계약 체결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11. 라이나원 업무 운영위탁 계약(TTS) 갱신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12. 라이나원과 경영컨설팅 계약 체결 승인	반대	-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부결
아-13. 라이나원 GA교육매니저 업무위탁 계약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14. 라이나원과의 상담원 시스템 및 VDI환경 사용에 대한 계약 승인(안)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15. 2023년 계열사 거래 포괄 승인	찬성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 Bryce 이사 불참 사유 : 일신상의 사유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의 주된 목적은 이사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활동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를 실시합니다. 매년 1분기중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이사회와 역할과 책임, 이사회와 구조, 운영 등으로, 크게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 이사회 구조는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점검합니다.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지만,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 부서에서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이사회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하였으며 평가 결과는 향후 이사회 운영에 참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가등급]

평가 등급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 미흡
평균 점수	100~90이상	90미만~80이상	80미만~60이상	60미만~40이상	40미만~0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의 목적은 이사회 및 이사회 내 각 위원회가 법령과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 및 각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구 및 경영진 견제기구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이사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과는 대표이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 시 정성적 평가를 활용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 평가로 나누어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합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는 이사회와 원활한 운영과 법령·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회와 결정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가 아닌 자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합니다. 선임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 회의 소집 및 주재,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당사의 경우 다년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역임하며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은 벤자민홍 사내이사가 2021년 10월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2022년 9월 이사회에서 재선임 되었습니다.

현재 선임사외이사는 최운열 사외이사로 2021년 3월 최초 선임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사 사외이사로 근무하며 뛰어난 전문성, 공정성, 충실성 등을 보여주는 등 선임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와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그리고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현재(2022. 12. 31. 기준) 사외이사 2명을 포함한 총 3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임기준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관리 및 후보 검증을 통하여 최종 후보자에 대한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당사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으로는 관계법령 및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으며,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자격요건은 아래의 항목과 같습니다.

-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직무윤리 등을 두루 갖춘 자
- 도덕성, 책임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력 등 품성과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춘 자

2022 사업연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2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2022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개최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사외이사 및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을 지원부서로부터 보고 받고, 후보군의 적격성을 검토한 후 2022년 12월 개최된 이사회에 해당 후보군을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2022. 12. 31. 기준) 위원장 포함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2명을 위원으로 선임, 위원회의 과반수(66.7%)를 사외이사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 재임하였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배보경	사외이사	위원장	2021.03.31.	2025년 정기주총 종료시
윤세리	사외이사	위원	2021.03.31.	2025년 정기주총 종료시
벤자민홍	상임이사	위원	2020.12.31.	2024.10.31..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2) 후보 추천 절차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최고경영자 선임을 위하여 임원후보의 추천과 관련한 절차를 정관 및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 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고, 이사회는 최종 후보자가 확정되면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절차를 완료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 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일정을 공시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사외이사 추천과 선임을 위하여 지배구조규범에 사외이사 자격요건 및 후보 추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과 더불어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이상과 같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공정하게 검증한 후 임원 후보로 추천하게 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위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후보 추천서에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및 위원회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합니다. 또한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22년 중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2회 개최되었으며, 위원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6개였으며, 의결안건이 6건으로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022년 2월 개최된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후보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로, 윤세리 후보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개최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최고경영자 후보군과 사외이사 후보군을 승인하였고, 이어 개최된 6차 정기이사회에서 그 내역을 보고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년 2월 9일 21:00

[안건 통지일: 2022년 2월 8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배보경	윤세리	벤자민 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최운열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박병원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안)	찬성	찬성	찬성	
다. 배보경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안)	의결권 제한 ^{주)}	찬성	찬성	
라. 윤세리 후보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	찬성	의결권 제한 ^{주)}	찬성	가결

주)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의안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나) 제2021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22년 12월 16일 10:40

[안건 통지일: 2022년 12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배보경	윤세리	벤자민 홍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최고경영자 후보군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사외이사 후보군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1. 3. 31. 신설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이사회가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당사의 2022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평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5단계 척도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2022년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한 내역이 없습니다.

2) 대표집행위원 후보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감사위원 후보

2021년 3월 취임한 감사위원 전원의 임기가 2022년 3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2022년 2월 9일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기존 감사위원 3인(최운열, 박병원, 배보경)에 대해 감사위원으로 재임기간 중 활동내역, 자격요건 적정성 및 관련분야의 경험 및 지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출생연도

- 최운열: 1950년
- 박병원: 1952년
- 배보경: 1958년

(3) 출신학교

- 최운열
 - 1974.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79.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82.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 박병원

- 1975.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1980.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석사)
- 1984. 워싱턴대학교(시애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배보경

- 1981.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 (학사)
- 1996. 고려대학교 경영관리 (석사)
- 2003. 고려대학교 경영관리 (박사)

(4) 경력

• 최운열

- 1982.09 ~ 2015.08. 서강대학교 교수
- 1995.03 ~ 2002.04.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2002.04 ~ 2003.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2005.07 ~ 2008.02. 서강대학교 부총장
- 2015.03 ~ 2016.03. KB금융지주 사외이사
- 2016.05 ~ 2020.05. 대한민국 국회의원(20대)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2021.03 ~ 현재 현대자산운용 사외이사

• 박병원

- 1976.08. 경제기획원 사무관 (행정고시 17회)
- 1998.03.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런던) 이사
- 2001.04.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2003.09. 재정경제부 차관보
- 2005.06. 재정경제부 차관, 제1차관
- 2007.03 ~ 2008.06.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 2007.04 ~ 2021.04.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
- 2008.06 ~ 2009.01.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2011.03 ~ 2014.03. KT 사외이사
- 2011.12 ~ 2014.11.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2015.02 ~ 2018.0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2015.03 ~ 2021.03. 포스코 사외이사 (2017년 이사회 의장)
- 2015.03 ~ 2018.12.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 2015.10 ~ 2018.01. 청년희망재단 이사
- 2017.06 ~ 2018.0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 2019.10 ~ 현재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
- 2020.03 ~ 현재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배보경**

- 1983.03 ~ 1996.08. 한국아이비엠 인력개발실
- 1996.09 ~ 2003.11.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원 부원장/교수
- 2003.12 ~ 2012.04. KAIST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교수
- 2012.04 ~ 2018.09.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 2014.03 ~ 2020.03. 웅진홀딩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2019.01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교수
- 2020.03 ~ 현재 도화엔지니어링 사외이사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 제안자의 인적사항

- **벤자민 홍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0.11 ~ 2020.12.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 2021.01 ~ 현재 라이나생명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 제안자는 당사의 대표이사직(2010.11 ~ 2020.12)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따라서 후보 제안자는 보험사 감사위원의 필요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와 상기 후보자들은 2021년 감사위원 후보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어 후보자로 추천 및 선임 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선임 이후에도 회사 업무상 만남 이외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당사와 거래 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운열은 재무관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재무 분야 전문가로서 저명한 석학이며, 다년간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관련 전문 능력이 풍부합니다.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임하였고,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직을 역임하는 등 금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두루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박병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은행연합회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였으며, 그 동안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감사위원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배보경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경영전문가로서 기업 경영 관리에 관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감사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2022년 2월 9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벤자민 홍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각 후보자들이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및 회계 등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경력과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평가: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관련 내규: 정관 제33조의7,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제9조, 제22조
- 평가: 자격요건 충족

각 후보자는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및 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에 해당하는바,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본인 소명

감사위원 후보자는 자격심사표,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를 검토한 결과 감사위원 선임에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각 후보자들에 대한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2월 9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이 법령 및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이 당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함양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사외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2) 출생연도

- 최운열: 1950년
- 박병원: 1952년
- 윤세리: 1953년
- 배보경: 1958년

(3) 출신학교

- 최운열
 - 1974.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 1979.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82. 조지아대학교 경영학 (박사)
- 박병원
 - 1975.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7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 1980. 한국과학기술원 산업공학 (석사)
 - 1984. 워싱턴대학교(시애틀)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윤세리
 - 1976.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 1980.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1982.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1984. 캘리포니아대학교(시애틀) 해스팅스 법학대학원 (석사)

- 배보경

- 1981.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 (학사)
- 1996. 고려대학교 경영관리 (석사)
- 2003. 고려대학교 경영관리 (박사)

(4) 경력

- 최운열

[일반경력]

- 1982.09 ~ 2015.08. 서강대학교 교수
- 1995.03 ~ 2002.04.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2002.04 ~ 2003.12.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 2005.07 ~ 2008.02. 서강대학교 부총장
- 2016.05 ~ 2020.05. 대한민국 국회의원(20대)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2015.03 ~ 2016.03. KB금융지주 사외이사
- 2021.03 ~ 현재 현대자산운용 사외이사

- 박병원

[일반경력]

- 1976.08. 경제기획원 사무관 (행정고시 17회)
- 1998.03. EBRD (유럽부흥개발은행, 런던) 이사
- 2001.04.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 2003.09. 재정경제부 차관보
- 2005.06. 재정경제부 차관, 제1차관
- 2007.03 ~ 2008.06.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 2007.04 ~ 2021.04.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

- 2008.06 ~ 2009.01.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 2011.03 ~ 2014.03. KT 사외이사
 - 2011.12 ~ 2014.11.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 2015.02 ~ 2018.02.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2015.03 ~ 2021.03. 포스코 사외이사 (2017년 이사회 의장)
 - 2015.03 ~ 2018.12. 두산인프라코어 사외이사
 - 2015.10 ~ 2018.01. 청년희망재단 이사
 - 2017.06 ~ 2018.03.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 2020.03 ~ 현재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 2019.10 ~ 현재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

• 윤세리

[일반경력]

- 1980. ~ 1982.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1983. ~ 1984. 한미합동법률사무소(Lee & Ko) 변호사
- 1986. ~ 1989. 미국 베이커앤드맥켄지 법률회사 변호사
- 1989. ~ 1997.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
- 1997. ~ 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
- 2011.01 ~ 현재 더멋진세상 사외이사
- 2014.05 ~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사외이사
- 2016.10 ~ 현재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외이사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 배보경

[일반경력]

- 1983.03 ~ 1996.08. 한국아이비엠 인력개발실
- 1996.09 ~ 2003.11. 이화여자대학교 경력개발원 부원장/교수
- 2003.12 ~ 2012.04. KAIST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교수
- 2012.04 ~ 2018.09.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 2014.03 ~ 2020.03. 웅진홀딩스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 2019.01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교수
- 2020.03 ~ 현재 도화엔지니어링 사외이사
- 2021.03 ~ 현재 현 라이나생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경력]

해당사항 없음

(5) 당사 사외이사 경력

- 최운열: 후보자 최운열은 당사 사외이사로 2021년 3월 최초 선임되었으며, 현재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으며,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적법성 및 적정성 감독을 통해 경영진의 합리적 경영판단과 업무 및 정책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박병원: 후보자 박병원은 당사 사외이사로 2021년 3월 최초 선임되었으며, 현재 보수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 윤세리: 후보자 윤세리 당사 사외이사로 2021년 3월 최초 선임 되었으며,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 배보경: 후보자 배보경은 당사 사외이사로 2021년 3월 최초 선임 되었으며,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및 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초 선임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성실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 제안자

(1) 후보 제안자의 인적사항

- 벤자민 홍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2010.11. ~ 2020.12.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 2021.01. ~ 현재 라이나생명 사내이사

(2) 후보자와의 관계

후보 제안자는 당사의 대표이사직(2010.11 ~ 2020.12)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당사의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따라서 후보 제안자는 보험사 감사위원의 필요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후보제안자와 상기 후보자들은 2021년 감사위원 후보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되어 후보자로 추천 및 선임 되기 전까지 개별적인 관계는 없었으며 선임 이후에도 회사 업무상 만남 이외 개인적인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후보자들은 당사와 거래 관계가 없어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최운열은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재무관리 박사 학위를 소지한 석학이며, 다년간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여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합니다.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임하였고,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직을 역임하는 등 금융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으로 그 동안의 경험을 두루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대한 의견개진 및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선임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박병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은행연합회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관련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였으며, 그 동안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관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함으로써 회사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과 보수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및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윤세리는 법률 전문가로서 규제 환경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으로 회사의 정도 경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후보자 배보경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경영전문가로서 기업 경영 관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회사의 경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등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부터 당사의 사외이사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감사위원 및 보수위원회 위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점을 인정하여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2022년 2월 9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벤자민 홍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각 후보자들이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및 회계 등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경력과 회사의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내역을 고려하여 감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라) 금융회사 등과 관계

- 금융회사 및 계열회사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대주주와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 임원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마)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관련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제9조, 제10조
- 평가: 자격요건 충족

각 후보자는 법령상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및 회계 등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에 해당하는바,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3) 적극적 자격 충족여부

(가) 전문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는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으로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후보자는 재무관리 석학이며 한국증권연구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KB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 관련 기관에 재직한 경험이 있으며, 박병원 후보자는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은행연합회, 우리금융지주 등에 재직한 경험이 있고, 윤세리 후보자는 법률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보경 후보자는 경영 및 인사관리 전문가로서 기업 경영 관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4인 모두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등 관련 분야 경력자이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 받은 인물들로서 전문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직무공정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는 사외이사는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직무공정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 후보자들은 당사와 거래 관계가 없고, 후보자의 경력 등을 검토한 결과 당사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공정성 있는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 윤리·책임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는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윤리·책임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 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및 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과거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갖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하고 회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모두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4인 모두 윤리·책임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라) 독립성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권한 및 책임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0조는 사외이사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와 그들의 특수관계인 및 계열회사와 회사 임직원 등과의 관계, 과거 경력에 비추어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사외이사 결격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독립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각 후보자들은 대주주 등과 어떠한 관계도 없으므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 결정함으로써 이사회에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 충실성

당사의 지배구조내부규범 제9조는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 후보자의 충실성 여부를 다방면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각 후보자들은 당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동향과 주요 지표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참석 및 각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당사 사외이사로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후보자 4인은 2021년 3월 신규 선임 이후 개최된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등 사외이사로서의 충실성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4) 본인 소명

후보자들은 자격심사표 작성, 이력서 및 취임 승낙서 등을 통해 본인 소명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각 후보자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2022년 2월 9일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및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자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자격요건 및 전문성, 윤리·책임성, 직무공정성, 독립성, 충실성 등을 검토한 결과, 후보자들이 법령 및 당사가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당사의 지속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해당 안건은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FY2021 정기주주총회일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는 총 4명이며, 4명 모두 연임하였으며 내부 평가 결과 연임한 사외이사 모두 사외이사로서 적합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사외이사명	재임기간	연임여부	이사회 등 출석률	평가 여부
최운열	2021.3월~2022.3월	연임	100%	적합
박병원	2021.3월~2022.3월	연임	100%	적합
윤세리	2021.3월~2022.3월	연임	100%	적합
배보경	2021.3월~2022.3월	연임	100%	적합

아)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 최운열

자격요건 검토보고서(최운열)

최운열 후보자는 재무 분야의 저명한 석학으로서 전문 능력 및 다양하고 풍부한 경력을 보유했기에 폭 넓은 시각으로 회사 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요건, 주요경력 및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결과 관계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사외이사로서 연간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박병원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박병원)

박병원 후보자는 재정경제부 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회사 경영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회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요건, 주요경력 및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결과 관계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사외이사로서 연간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윤세리

자격요건 검토보고서(윤세리)

윤세리 후보자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로서 규제 환경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요건, 주요경력 및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결과 관계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사외이사로서 연간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배보경

자격요건 검토보고서(배보경)

배보경 후보자는 현재 경영학 교수로 재직중인 경영전문가로서 경영관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여 회사의 경영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회사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합니다.

또한 후보자의 자격요건, 주요경력 및 결격사유 등을 검증한 결과 관계 법령 및 회사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21년 사외이사로서 연간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외이사 활동내역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 받고 있으며, 추천된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외이사 후보자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합니다. 추천된 후보자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되도록 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에 의한 후보군 관리 외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회사 외부로부터의 추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당사는 2022년 12월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을 최초로 승인하였고, 후보군 관리 내역을 2022년 12월 제6차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임원후보 추천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의(심의)일자 : 2022.12.16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수	백분율	비고
금융·경제	4	66.7%	
경영	1	16.7%	
회계	-	-	
법률	1	16.7%	
기타	-	-	
합계	6	100.0%	

추천경로	후보군수	백분율	비고
경영진	6	100.0%	
지원부서	-	-	
합계	6	100.0%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 2022.12.16 제6차 이사회

분야	후보군수	백분율	비고
금융·경제	4	66.7%	
경영	1	16.7%	
회계	-	-	
법률	1	16.7%	
기타	-	-	
합계	6	100.0%	

추천경로	후보군수	백분율	비고
경영진	6	100%	
지원부서	-	-	
합계	6	100%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지속가능경영팀(팀장 1명 차장 2명)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의 업무 및 활동 지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한 자격 요건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22년 총 2차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습니다.

일자	위원회명	보고 및 지원내용
2022.02.09.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 검증결과 보고
2022.12.16.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후보군 검증결과 보고

5) 기타 금융회사가 정한 임원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 일시, 안건내용

가) 이사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2. 이사회 다. 활동내역 2) 회의 개최 내역 참조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내역 참조

다) 감사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6. 감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 내역 참조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7. 리스크관리위원회 다. 활동내역 및 평가 2) 회의 개최 내역 참조

마) 보수위원회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3) 회의 개최내역 참조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최운열

(1) 활동내역

최운열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총 6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2022년 6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충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회사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박병원

(1) 활동내역

박병원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총 6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2022년 총 12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충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회사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윤세리

(1) 활동내역

윤세리 사외이사는 2022년 개최된 총 6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위원회와 위원으로 2022년 총 7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충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회사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라) 사외이사 배보경

(1) 활동내역

배보경 사외이사는 2022년 총 6회의 이사회에 모두 참석하였고, 감사위원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보수위원회 위원으로 2022년 총 9차례 개최된 위원회에 모두 참석하는 등 충실하게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제공된 의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개진 및 심의를 통해 회사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마) 요약

구분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활동 시간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보수위원회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개 최	참 여	찬 성	실적
최운열	6	6	30 ¹⁾	6	6	9	-	-		-	-		-	-		28.0
박병원	6	6	31	6	6	9	-	-		5	5	8	1	1	3	34.5
윤세리	6	6	31	-	-	-	2	2	5 ¹⁾	5	5	8	-	-		31.0
배보경	6	6	31	6	6	9	2	2	5 ¹⁾	-	-		1	1	3	32.5

1) 본인 선임 권으로 의결권 없음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현황

당사는 임원의 경영판단상의 과실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하여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아래의 2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연중 대주주 변경 관련으로 기존 Cigna 소속에서 발생한 임원 배상 이슈에 대하여 한시적 보험(D&O Tail Coverage)을 가입하였으며, 2028년 7월까지 유지할 예정입니다.

구분	가입사	가입기간	보상한도액	비고
임원배상책임보험 (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DB손해보험	~2028.07.01	USD 10,000,000	LINA (tail coverage)
	AIG	~2023.07.02	USD 15,000,000 primary USD 300,000,000 aggregate	Global Insurance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사외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1. 교육·연수 실시 내역					
가.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보험시장 변화에 따른 LINA 전략 방향 • 2022년 9월 28일, (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나.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관리 감독 방안 • 2022년 9월 28일, (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다.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IFRS17제도이해와 도입영향 • 2022년 9월 28일, (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라. 교육·연수 일시 및 내용		• 자금세탁방지 교육 • 2022년 12월 16일, (1시간)			
	사외이사별 참석 여부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2. 누적 교육 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4시간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1) 사외이사 최운열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 법령 및 내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내지 제10조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관련법령 및 내규상 자격요건 충족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 충실성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위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최운열 사외이사는 재무관리 석학으로서, 한국증권연구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KB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 관련 기관에의 재직을 통하여 금융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최운열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고,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 역시 계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중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과거 및 현재까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요건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재무 및 금융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 행사가 가능함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2) 사외이사 박병원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 법령 및 내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내지 제10조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관련법령 및 내규상 자격요건 충족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 충실성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위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박병원 사외이사는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 재정경제부, 은행연합회, 우리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 관련 기관에의 재직을 통하여 금융·경제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박병원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고,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 역시 계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중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과거 및 현재까지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요건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금융 및 경제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 행사가 가능함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3) 사외이사 윤세리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 법령 및 내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내지 제10조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관련법령 및 내규상 자격요건 충족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 충실성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위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윤세리 사외이사는 법률 분야 전문가로 검찰 및 국내외 대형로펌에 재직하며 법률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윤세리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고,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 역시 계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중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과거 및 현재까지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요건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법률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 행사가 가능함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	----	--

4) 사외이사 배보경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 법령 및 내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8조 내지 제10조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관련법령 및 내규상 자격요건 충족

나) 적극적 자격요건

- 전문성, 직무공정성, 윤리·책임성, 독립성, 충실성
- 평가: 2022년 활동기간 중 위 적극적 자격요건 충족

배보경 사외이사는 경영 분야 전문가로 이화여대 경력개발원, KAIST 경영대학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서 기업경영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배보경 사외이사는 최초 선임시부터 현재까지 당사와 거래관계가 없고,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당사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으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바, 직무공정성 및 독립성 요건 역시 계속적으로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사외이사 활동기간 중 이사회 및 소속 위원회에 100% 참석하였으며, 과거 및 현재까지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맡은 역할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여 충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바 윤리·책임성 및 충실성 요건 역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지배구조법상 임원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다. 지배구조내부규범상 사외이사의 소극적 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충족	경영 및 인사관리 분야 전문가로서 당사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유함	
나. 직무공정성	충족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 수행이 가능함	
다. 윤리·책임성	충족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함	
라. 독립성	충족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의사결정권한 행사가 가능함	
라. 충실성	충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함	

마. 기부금 등 지원내역

사외이사	기부받은 비영리법인등		기부한 금융회사등	지원 내역	
	법인등의 명칭	사외이사와 관계		선임 전 (과거 2년)	선임 후
배보경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라이나생명보험	2019년 : 800만원	-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개요

당사는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이사는 연임이 가능하고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1회 사외이사 활동내역을 평가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시 평가결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1) 평가주체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참석률의 구성으로 이루어 집니다.

(2) 평가기준

평가항목은 사외이사별로 전문성, 독립성, 적극성 및 책임의식, 공정성 및 윤리의식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또한 평가결과는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직원 평가, 참석률 별로 정해진 비중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3) 평가절차

평가절차는 사외이사 지원부서에서 평가양식을 각 평가주체에게 배포하여 이에 대하여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22년 당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내부평가 결과 4명의 사외이사(최운열, 박병원, 윤세리, 배보경)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부여 받았습니다.

평가결과 당사의 사외이사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책임의식을 갖고 활동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외이사 고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제시를 통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및 개선방안

사외이사	평가결과				개선방안
	전문성	독립성	적극성/ 책임의식	공정성/ 윤리의식	
최운열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박병원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윤세리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배보경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매우 우수	-

3) 외부평가

당해 연도에 당사는 별도의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의 선임 사외이사는 최운열 사외이사입니다. 최운열 사외이사는 2022년 한해 동안 적극적인 이사회 활동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외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여 경영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 평가: 지원부서 : 지속가능경영팀(법무&준법감시 본부)
- 조직구성 : 팀장 1명, 차장 2명
- 지원내용
 - 이사회 소집 및 진행 등을 위한 실무지원
 - 이사회 의사록 등 회의내용 기록 및 관리
 -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무지원 및 제반 업무 등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최운열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월급여	6,000만원	기본급 500만원*12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24만원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24만원	단체보험 지원

2) 사외이사 박병원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
월급여	6,000만원	기본급 500만원*12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84만원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60만원	2022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24만원	단체보험 지원

3) 사외이사 윤세리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
월급여	6,000만원	기본급 500만원*12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124만원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00만원	2022년 건강검진 지원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24만원	단체보험 지원

4) 사외이사 배보경

가) 재직기간 : 2021년 3월 31일 ~ 현재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6,000만원	-
월급여	6,000만원	기본급 500만원*12개월
상여금	-	-
기타 수당	-	-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20만원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	-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20만원	단체보험 지원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 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사외이사 성명	사외이사와의 관계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담당 직위)	계약체결 내용
윤세리	본인	법무법인 올촌 (고문)	계약당사자 : 법무법인 올촌
			계약기간 : 2022.07 ~ 2022.12
			계약 주요 내용 : 이사회 운영 실무 관련 자문 계약
윤세리	본인	법무법인 올촌 (고문)	계약당사자 : 법무법인 올촌
			계약기간 : 2022.11 ~ 자문업무 종료시까지
			계약 주요 내용 : 법률자문계약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2022.12.31. 기준)

성명	최초선임일	임기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위원회	직위	경력
이상제	2017.03.31	2017.12.20	9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7.3 ~ ‘17.12)	-	기획재정부 장관 자문관 (‘09.2~‘11.03)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11.3~‘14.3)
김현수	2017.12.22	2021.03.31	39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17.12 ~ ‘21.3)	선임사외이사 (‘20.12 ~ ‘21.3)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96.9~) 금감원 시험관리위원 (‘11.6~‘17.7)
최운열	2021.03.31	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21.3~)	선임사외이사 (‘21.3 ~) 감사위원회 위원장 (‘21.3 ~)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02.4~‘03.12) 서강대 부총장 (‘05.7~‘08.2)
박병원	2021.03.31	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21.3 ~)	보수위원회 위원장 (‘21.6 ~)	은행연합회 회장 (‘11.12~‘14.11)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15.2~‘18.2)
윤세리	2021.03.31	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리스크관리위원회 ·임추위원회 (‘21.3 ~)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21.6 ~)	우방종합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89~‘97) 법무법인(유) 올촌 명예 대표변호사 (‘97~)
배보경	2021.03.31	25년 정기주총 종결시	21개월	감사위원회 ·보수위원회 ·임추위원회 (‘21.3~)	임추위원회 위원장 (‘21.9 ~)	KAIST 경영대학 교수 (‘03.12~‘12.4)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19.1~)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는 최고경영자 선임과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과정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3월 제2차 이사회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설정,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업무 등 입니다.

<붙임>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5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상법 및 지배구조법에 의한 임원의 요건에 부합할 것을 최소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규정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는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직무윤리 등을 두루 갖춘 자 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도덕성, 책임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력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개인적 품성과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최종후보군 발굴 및 평가·검증 등의 업무를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 최고경영자의 중도 사의 표명, 회사가 속한 시장 상황, 경영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만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로서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규정상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정관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합니다.

2) 비상계획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합니다.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비상상황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합니다. 이러한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는 일반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 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법령상 자격요건 충족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관련 내규: 지배구조내부규범 제39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 제5조
- 평가: 자격요건 충족

현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조지은 대표이사는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오랜 보험회사 재직 경력을 통해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당사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위해 노력하였고, 최고경영자로서의 도덕성, 책임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최고경영자로서 충분한 자질과 성과가 이미 검증되었습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2021년 10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2021년 9월 7일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현 조지은 대표이사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2021년 10월 26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재선임된 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임되었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 2021년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21년 9월 7일	대표이사 후보 추천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021년 10월 26일	이사 선임	임시 주주총회
2021년 10월 26일	대표이사 선임	제5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지침

당사는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이사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이사회는 해당 규정에 따라 후보군 선발 및 구성, 후보군에 대한 평가 및 자격검증, 후보군 압축, 예비후보자 및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2022년 12월 16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6명의 인사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후보군 탐색, 발굴 및 자격검증 등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후보군 현황

보고일자 : 2022년 12월 16일 제6차 이사회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6	100.0%	
외부	금융회사	-		
	비금융회사	-		
	공공기관	-		
	기타	-		
합계		6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최고경영자	-		
이사회	6	100.0%	
주주	-		
외부기관	-		
기타	-		
합계	6	100.0%	

바. 이사회 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계획의 점검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전반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였고, 신규로 선정한 최고경영자 후보군 6인에 대해 세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를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는 법무&준법감시본부 산하의 지속가능경영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규정에 따라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최고경영자 승계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 부서 운영 현황] (2022.12.31. 기준)

- 지원부서 : 지속가능경영팀 (직원수 총 3명)
- 담당자 : 팀장 1명, 차장 2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개선하고, 경영진의 업무처리에 대해 적법성 및 적정성을 감독하며, 필요 시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회사가 경영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있으며,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이사 및 집행위원의 업무집행 감독

(1) 이사회 등 안건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고감사책임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내부감사부서(이하 “감사부서”)에서는 이사회 부의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중 총 6회 이사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절차준수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2)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12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에 의하여 경영진에게 업무집행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위원회규정 등의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감사부서를 통해 경영진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감독업무를 수행합니다.

나)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 및 감독

감사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10조에 의거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2022~2024회계연도 외부감사인은 2021년 9월 감사위원회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선정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외부회계감사계획, 감사수행 및

감사결과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일 자	주요 내용
2차	2022. 3. 14.	외부감사인의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수행/종료 보고
4차	2022. 6. 27.	2021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승인
5차	2022. 9. 28.	2022회계연도 특별계정 외부감사인 선임
6차	2022. 12. 16.	외부감사인의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보고
		2022회계연도 특별계정 외부감사계약 보고

다) 최고감사책임자에 관한 사항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전원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최고감사책임자를 선임하여 아래 업무를 위임하고 있으며, 최고감사책임자는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주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 연간감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사계획, 실시,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감사결과 발견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업무 관련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사항
-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라)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상법 제447조의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외부감사법 제8조).

감사부서에서는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등에 대해 결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021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영업보고서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규정에 의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부서에서 회사의 2021회계연도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실태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기준에 근거하여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2022년 제1차 감사위원회 ('22. 2. 15.)의 승인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감사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배구조법 제19조, 정관 제33조의7),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19조, 감사위원회규정 제8조).

이에 따라 정기주주총회('22.3.31.)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3인의 이사(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였으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선임하였습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만료일
최운열	사외	위원장	2022. 3. 31. (재선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박병원 ^주	사외	위원	2022. 3. 31. (재선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배보경	사외	위원	2022. 3. 31. (재선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주) 회계/재무전문가(前 재정경제부 제1차관)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및 평가

감사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 당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6회의 감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20건(의결안건 9건, 보고안건 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감사위원회 위원의 참석률은 100%로 이는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모든 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22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2022. 2. 15.(화) (09:30)

[안건 통지일: 2022. 2. 11.(금)]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외부감사인 선임사항 보고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1년 감사활동결과 보고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1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1년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2022. 3. 14.(월) (11:00)

[안건 통지일: 2022. 3. 10.(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의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수행/종료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 제출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2022년 1분기 내부감사 실시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회계연도 결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22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2022. 3. 31.(목) (16:00)

[안건 통지일: 2022. 3. 29.(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2022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2022. 6. 27.(월) (12:10)

[안건 통지일: 2022. 6. 23.(목)]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2분기 내부감사 실시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1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회계연도 외부감사인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마) 2022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2022. 9. 28.(수) (10:00)

[안건 통지일: 2022. 9. 21.(수)]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년 3분기 내부감사 실시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년 2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2회계연도 특별계정 외부감사인 선임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22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2022. 12. 16.(금) (14:00 ~ 14:20)

[안건 통지일: 2022. 12. 12.(월)]

항 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이사 성명		최운열	박병원	배보경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외부감사인인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획 보고	특이사항 없음			
	나. 2022회계연도 특별계정 외부감사계약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2022년 4분기 내부감사 실시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2022년 3분기 내부감사협의제도에 따른 점검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년 연간감사계획 승인의 건(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감사위원회가 법령 및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감사위원회 평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5단계 척도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1) 설치 현황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으로 감사부서를 두고 있고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감사책임자 산하에 2개팀(감사팀, 영업감사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사 담당임원 및 내부감사인력은 회계, 감사, IT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간감사활동

감사부서는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2022년 수립한 법정감사,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등 총 15건의 감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기 단위로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3) 감사위원회 보고 내역

감사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내역은 총 20건(의결안건 9건, 보고안건 11건)으로 보고 일자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 일자	보고대상	보고 및 지원 내용
2.15., 3.14., 3.31. 6.27., 9.28., 12.16. (총 6회)	감사위원회	각 분기별 정기/임시위원회 회의 안건보고 (의결안건 9건, 보고안건 11건)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무)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위험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 정책수립 및 회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활동을 수행 합니다.

또한 리스크관리의 주요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위험관리 기본방침 수립, 위험 허용한도의 설정 및 변경,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위험관리 관련 제규정의 제·개정 등 리스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와 전략에 기반하여 수립된 위험관리 전략 및 이행 계획을 승인합니다.

나) 부담 가능한 위험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년 회사의 위험수용범위(Risk Appetite)를 승인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수용범위는 보험, 신용, 금리, 시장 및 운영 등 부문별 위험을 감안하여 적정자본을 배분하여 결정합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위험수용범위의 준수여부에 대하여 분기단위로 점검합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자산유형별, 지역별, 국가별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손실허용한도를 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의 경영목표 및 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기준 및 관련 내부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사항을 승인합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사의 위험관리활동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통해 회사의 자본적정성과 건전성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험관리전담부서는 자본적정성관리의 주요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 및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의 현황 및 분석결과, 회사의 잠재적 재무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신용, 금리, 시장 및 운영 등 부문별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말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비중은 66.7%입니다.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윤세리	사외이사	위원장	2022.03.31 (재선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박병원	사외이사	위원	2022.03.31 (재선임)	2025년 3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조지은	상임이사	위원	2021.10.31 (재선임)	2024.10.31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및 평가

2022년에는 총 5회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결안건은 8건, 보고안건은 8건이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의 참석율은 100%로 위험관리와 관련된 중요 의사결정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제 2022 년도 제 1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 년 2 월 15 일 (13:00)

[안건 통지일 : 2022.2.11]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세리	박병원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1 년 4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보고	-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나) 제 2022 년도 제 1 차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 년 3 월 31 일 (16:10)

[안건 통지일 : 2022.3.29]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세리	박병원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임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 ALM Target 조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SAA)(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제 2022 년도 제 2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 년 6 월 27 일 (13:10)

[안건 통지일 : 2022. 6.23]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세리	박병원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1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			
4. 의결안건				
가. 유동성 비상계획지침 개정(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제 2022 년도 제 3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 년 9 월 28 일 (11:10)

[안건 통지일 : 2022.9.26]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세리	박병원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2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 금융시장변동성 확대에 의한 영향 추가 보고			
4. 의결안건	해당사항 없음			

마) 제 2022 년도 제 4 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22 년 12 월 16 일 (15:20)

[안건 통지일 : 2022.12.15, 사전보고 진행]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윤세리	박병원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가. 2022 년 3 분기 리스크관리 현황	특이사항 없음			
나. 2022 년 통합위기상황분석 운영결과 보고	특이사항 없음			
다. K-ICS 도입준비 경과보고	특이사항 없음			
라. ORSA 구축계획 추진현황	특이사항 없음			
마. 2023 년 리스크관리팀 중점추진과제	특이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3 년 리스크 한도 배분(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22년 재보험 운영현황 및 2023년 운영 계획(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파생금융거래 전략(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22년 ALM 추진 현황 보고 및 일부 기준 변경(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회사의 주요 리스크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고 일관된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수행합니다.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리스크관리위원회 평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5단계 척도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해당사항 없습니다.

9. 기타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외기관 평가 결과

2022년 실시한 한국ESG기준원의 지배구조부문 B등급 획득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 구조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 되도록 하는 것을 그 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이사회규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2021년 3월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수위원회 활동내역의 기록과 관련하여 「보수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 의사록을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의사록의 내용에는 위원회의 안건, 경과,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사록은 회사기록으로서 보존할 것도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 구현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규정」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총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전문가로 정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를 1인 이상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 측면이 보수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3인(박병원, 배보경, 조지은)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2인(박병원, 배보경)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박병원 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어, 보수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박병원 이사는 재정경제부에서 종사한 재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며, 현재 당사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 심도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직명	사외이사 여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여부)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 종사한 경험 여부	약력
박병원	위원장	사외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前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前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現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배보경	위원	사외이사	유	前 KAIST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 前 IGM 세계경영연구원 원장 現 고려대 경영대학 Exec Ed 센터장
조지은	위원	사내이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유	前 라이나생명 Operation부문장 前 라이나생명 총괄 부사장 現 라이나생명 CEO

2) 구성원

성명	상임/사외/ 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박병원	사외이사(비상임)	위원장	2021.3.31	2025.3월 정기주총시
배보경	사외이사(비상임)	위원	2021.3.31	2025.3월 정기주총시
조지은	사내이사(상임)	위원	2021.3.31	2024.10.31

3)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의 인원 현황(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당사 보수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지원받기 위해 임원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회사에 외부기관의 자문용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회사의 성과보수체계를 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2021년 보수체계 적정성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2021년 성과에 대한 변동보상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보수체계 적용대상자 및 운영기준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는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제출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의결하였고,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거나, 성과보수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공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의결하는 이사회 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총보수 중 기본급과 성과보수의 비중과 관련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당사 보수체계 및 운영방식,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성과보수 이연지급의 방식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의 총보수 중 상당부분을 성과보수로 하고 있으며, 성과보수의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 적정하게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심의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당사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는 '라. 1)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중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절차와 관련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당사 보수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상기 내용을 점검 하였습니다.

현재 당사의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으며, 위험수준에 대해서도 크게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보수의 원칙, 설계 및 조정, 이연지급, 성과보수의 지급형태 및 방식, 현금 보수 지급, 보수체계 재조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전반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으며, 운영 면에 있어서도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수위원회는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 등 보수체계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당사 경영진의 보상정책 및 운영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보상체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사 적용되고 있습니다.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당사는 '보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보수위원회에서 지배구조법에서 정의하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범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2월 15일 개최된 제 1차 보수위원회에서 변동보상의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포함한 임원이 변동보수대상자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으며, 해당 범주에 따라 2022년 12월말 기준 임원은 총 34명 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12월말 기준)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등	34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주) 2022.12.31일 현재 재직 중인 임원 기준. 단, 사외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해외파견임원은 제외하며, 회장 직급의 경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발생한 성과보수는 없음.

10)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 전 각 위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할 수 있으나, 2022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보수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며 경영진 등의 성과보수체계가 건전하게 설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1회의 보수위원회가 소집되었고, 참석율은 100% 입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22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22년 2월 15일 (12:30~13:00)

[안건 통지일 : 2022.02.08]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설명	박병원	배보경	조지은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	해당사항 없음			
4. 의결안건				
가. 2021년 보수체계 적정성 평가 및 성과보수 지급 승인(안)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나. 2022년 보수체계 적용 대상자 및 운영기준 승인(안)	찬성	찬성	의결권 제한 ^{주)}	가결
다. 2021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및 공시 승인(안)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본인과 관련된 안건으로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

4) 평가

보수위원회가 법령 및 당사 사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평가는 설문지를 통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위원회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2022년 보수위원회 평가는 위원회 구성, 위원회 역할과 책임,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항목들을 5단계 척도로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 또는 중요 사업부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회사 차원의 성과에 대하여 재무적인 지표(신계약보험료, 신계약가치, 세전이익 등)와 비재무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임원의 경우 회사 KPI, 담당업무 KPI를 평가에 반영하며, 담당업무의 재무적인 지표와 비재무적인 평가요소를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 업무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에 연동하지 않도록 직접적 수익성 지표를 제외한 전략과제 위주로 평가하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경우에는 민원발생건수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등의 사항에 대하여 성과측정지표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과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개인의 보수는 회사 차원의 성과와 담당조직 KPI, 비계량적인 전략과제 성과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며, 임원의 경우 개인별 target을 기반으로 성과측정 결과에 따른 적용률이 반영됨으로써 회사 및 개인의 성과와 그 보수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라이나생명은 지난 2021년 3월 이래로 매년 보수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성과보수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이연지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성과보수는 단기성과보수(STI)와 장기성과보수(LTI)로 구성되며, 전체 성과보수의 40%이상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이연지급하고 나머지는 즉시 현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외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아닌 직원들은 1년간의 성과에 따라 차년도에 성과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 및 환수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이상 이연지급하며, 임원의 경우 개인 성과 달성률에 따라 현금 또는 주식 부여수량이 조정되고, 비윤리적 행위, 법률 위반 등의 경우 성과보수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성과보수액 결정시 이연보수 지급을 위한 주식수가 지급 확정되며, 이를 3년이상 이연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액은 이연 지급 시점의 공정시가에 따라 변동됩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전체 보수액 중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보수 또는 일반직원과 유사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임원의 경우 성과평가에 의해 지급되는 단기성과보수(STI) 및 장기성과보수(LTI)는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보수의 지급형태는 현금보수와 주식보수의 형태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당사는 임원의 성과보수에 대하여 회사의 장기적인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연간 총 성과보수의 40%이상이 주식보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시점에 개인별 성과에 따라 확정된 주식보수의 비중이 40%미만일 경우에는 현금보수의 일부를 3년이상 이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보수 총액의 60%미만을 즉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과보수 총액의 40%이상에 대해서는 3년이상 이연지급하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위험관리, 준법감시 부서 성과보수체계의 독립성(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해 경영성과 및 개인별 업무성과, 가치창출 달성도 등에 따라 차별화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성과지향형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당사는 직원 개인의 성과에 따른 차등적 임금인상 및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당사는 '보수위원회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보수위원회 위원들에게 외부자문 요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2년의 경우 별도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7)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는 보상체계의 리스크 연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개인적 위험회피 전략 또는 보상관련 보험을 활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8)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2022년 7월 당사의 대주주가 Chubb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라, 임원 성과보수체계 중 장기성과보수(LTI)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어 2023년 3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9)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21년)	860	4,919	0.17	852	1.01
당해년도 (2022년)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주3) 임직원수는 해당년도 12/31일 재직자 기준이며, 위촉직 및 파견직 근무자는 제외한다. 단, 연말입사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해당년도에 발생한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등기임원	미등기임원	관리직 (팀장이상)	비관리직 (직원)
전년도 (2021년)	보수총액	14.9	108.6	112.2	624.1
	성과보수액	2.3	18.3	24.1	112.5
당해년도 (2022년)	보수총액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성과보수액				

주) 임직원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주1}	기본급 ^{주2}	성과보수액 ^{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21년)	임원	33	79.6	43.2	22.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12/31일 현재 재직자 중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해외파견인력은 제외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 ^{주1}	주식연계 상품 ^{주2}	기타 ^{주3}
전년도 (2021년)	임원	43.2	22.8	20.4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 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식 사항은 확정적으로 부여(grant)되는 경우 해당시점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원화 환산시에는 해당시점의 고시 환율을 적용한다. 단, 확정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하며, 환율 또한 회계연도 말의 고시 환율을 적용한다.

(예시 : 2020년 주식 내역은 2021.02.24일부로 확정됨에 따라 해당일자의 Fair Market Value 및 환율을 적용함)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주4) 주1), 주2)의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21년)	임원	61.7	52.5	9.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해당년도 발생 성과보수액을 익년도 1/4분기중 평가하여 이연규모를 확정하는 경우 동 이연보수액을 해당년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21년)	임원	61.7	1.6	60.1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21년)	임원	61.7	22.0	26.7	8.8	4.1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21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21년(t기) 발생분, 2020년(t-1기) 발생분, 2019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 ^{주1}	직접적 조정 ^{주2}	간접적 조정 ^{주3}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 ^{주4}
전년도 (2021년)	임원	+1.9	-	+1.9	61.7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21년)	임원	3	1.0	1.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22년)	임원	'작성 중' (2023년 4월 3일 공시 예정)		
	금융투자업무담당자			

주1)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주2) 해당년도중 6개월이상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 중 퇴직한 인원

8) 기존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신규 고용자에 대한 보장성 상여금(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10) 일회성 인센티브 지급 건수 및 금액(은행에 한함)

해당사항 없습니다.

[첨부 1]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정관

[첨부 2]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첨부 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첨부 1]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이 회사는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LINA Life Insurance Company of Korea”(이하 “회사”라고 한다)라 표기한다.(개정 2016. 10. 27.)

제2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27.)

- (1)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 제3보험 및 재보험계약의 체결, 생명보험 및 제3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 (2) 자산의 운용;
- (3)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위가능한 기타 부수 업무;
- (4) 기타 상기 목적과 관련되거나 그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

제3조 [제정 및 개폐]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이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신설 2016. 10. 27.)
- (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 10. 27.)

제4조 [광고 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lina.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문일간지인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016. 10. 27.)

제5조 [외국인에 대한 통지 및 보고]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 이외에 법률과 본 정관에 따라 외국인이나 한국 외에서 설립된 외국법인에게 직접 발송해야 하는 모든 통지 및 보고는 영문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주식

제6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4,000,000주로 한다.(개정 2016. 10. 27.)
- (2) (삭제 2016. 10. 27.)

제7조 [일주의 금액]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개정 2016. 10. 27.)

제7조의2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신설 2016. 10. 27.)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0주로 한다.

제7조의3 [주식의 종류] (신설 2016. 10. 27.)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이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 (1) (삭제 2016. 10. 27.)
- (2)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개정 2016. 10. 27.)
- (3) 반대취지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주가 그러한 신주인수권을 갖는 경우

그 권리행사 기간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얻는데 충분한 기간이 부여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4) (삭제 2016. 10. 27.)

제8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신설 2016. 10. 27.)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전환주식의 전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주권의 종류]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 일십만주권 단위 및 주주가 합리적으로 서면 요구한 단위로 발행한다. (개정 2016. 10. 27.)

제10조 [주주명부]

회사는 한국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비치한다.

제11조 [명의개서 및 질권등록]

(1) 양도, 매매, 기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주식의 이전으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에 그의 주권과 함께 회사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양도, 매매 또는 유증이나 상속, 합병 또는 병합등과 같이 기타 유사한 사유에 의한 주식의 이전이 아닌 기타 사유로 인하여 명의개서를 원하는 주주는 당해 주권 및 취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에 대한 질권의 등록이나 말소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에 그의 주권과 함께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신청서의 접수 즉시 회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또는 질권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주권에 대표이사가 확인을 위해 날인한 후 이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5) 주식의 이전은 주식 양수인의 완전한 성명과 주소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12조 [주권의 재발행]

(1) 주식의 분할, 병합 또는 손상이나 오손으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원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에 폐기될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이 심하여 주권의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주권은 분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항을 적용한다.

(2) 주권의 분실로 인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원하는 주주는 회사 소정 양식의 신청서에 분실된 주권에 대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본 정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명의개서 또는 주권의 재발행을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그 절차 완료 전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의 신고]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주주 및 그 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여하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나 대리인은 대한민국 내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27.)

(3) 주주의 대리인은 그 대리권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여하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증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상기 신고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회사에 제출된 모든 서류들은 제1항에서 신고된 인감의 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개정 2016. 10. 27.)
- (2)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 (3)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제3장 주주총회

제16조 [소집시기]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개정 2016. 10. 27.)
-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의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6. 10. 27.)
- (3) (삭제 2016. 10. 27.)

제17조 [소집권자]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개정 2016. 10. 27)
-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27조의1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0. 27)

제17조의2 [소집통지 및 공고] (신설 2016. 10. 27.)

-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은 회의 전에 회사의 모든 주주의 서면동의로써 단축시킬 수 있다.
- (2) 주주총회는 회의의 참석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가 만장일치로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회의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결의할 수 없다.

제17조의3 [소집지] (신설 2016. 10. 27.)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의장]

-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20. 10. 26., 2021. 3. 31.)
- (2)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6.)

제19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제20조 [의결권]

- (1)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개정 2016. 10. 27.)
-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 (3)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4)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7.)

제20조의2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신설 2016. 10. 27.)

- (1)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회사는 제1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주총회의 연기 또는 휴회]

주주총회에서는 연기 또는 휴회의 결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연기 또는 휴회가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27.)

제22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영문과 국문으로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 한다. 영문본과 국문본 의사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든 의사록의 영문본이 우선한다. (개정 2016. 10. 27.)
- (2) 의사록의 사본은 주주총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요구한 주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주주에게는 그들이 명시적으로 국문의사록을 요구하지 않는 한 영문의사록을 등기항공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이사, 대표이사

제23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제24조 [이사의 선임]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2) (삭제 2012. 6. 15)

(3) 이사의 선임은 관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7., 개정 2021. 3. 31.)

제24조의2 (삭제 2016. 10. 27.)

제25조 [이사의 임기]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낙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개정 2016. 10. 27., 2021. 3. 31.)

(2) (삭제 2012. 6. 15.)

(3)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시에 선임된 초대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개최되는 제3차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시에 만료한다.

(5)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는 이 회사에서 6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으며, 이 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하여 재임할 수 없다. (신설 2021. 3. 31.)

제25조의2 [이사의 보선] (신설 2016. 10. 27.)

(1) 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3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 [대표이사]

(1) 이사회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들 중에서 1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단, 초대 대표이사는 창립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3. 31.)

(2)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장이 된다.

(3) (삭제 2016. 10. 27.)

(4) (삭제 2012. 6. 15.)

제27조 (삭제 2012. 6. 15.)

제27조의1 [이사의 직무] (신설 2016. 10. 27.)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대표이사의 유고시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신설 2016. 10. 27.)

- (1)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

제27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신설 2021. 3. 31.)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이사의 보수]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내에서 개별 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한다. 이사의 보수 중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본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채택된 임원퇴직급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8., 2021. 3. 31.)

제28조의2 [상담역 및 고문] (신설 2016. 10. 27.)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9조 [이사회의 성격]

-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6. 10. 27.)
- (2) 이사회는 법률이나 본 정관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회사의

모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정을 할 권리 및 권한을 갖는다.

제3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어느 이사가 이를 요청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의하여 소집될 수 있다. 이사회의 소집 일시 및 장소는 대표이사가 결정하며 그 소집 장소는 대한민국내외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 대표이사는 늦어도 이사회의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이사회의 회의 소집 통지를 개별통지 방식으로 행하여야 하며, 위 통지에는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단, 위 기간은 회의 전에 모든 이사의 동의에 의하여 단축 또는 생략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3) (삭제 2016. 10. 27.)

(4)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소집통지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1. 3. 31.)

제31조 [의장]

(1)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2021. 3. 31.)

(2)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3)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6.)

제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이사회 회의 성립을 위한 의사정족수는 적어도 이사 전원의 과반수이어야 한다. 법률 또는 본 정관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이사회의 모든 조치 및 결의는 출석 이사 전원의 과반수의 찬성투표로 채택된다. (신설 2016. 10. 27.)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한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0. 27.)

제32조의2 [이사회 부의사항] (신설 2016. 10. 27., 전문개정 2021. 3. 31.)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각 호 외의 부의사항은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다. (개정 2021. 3. 31.)

(가)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사항

(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 대주주·임원 등과의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아) 기타 관계법령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및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2)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3. 31.)

제33조 [이사회 의사록]

(1)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영문과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회사의 본점에 이를 비치한다. 영문의사록 및 국문의사록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의사록이 우선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3) 의사록의 사본은 이사회 회의 후 30일 이내에 이를 요구한 주주 및 이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 주주 및 대한민국 외에 거주하는 이사에게는 그들이 명시적으로 국문의사록을 요청하지 않는 한, 영문의사록의 사본을 등기항공우편으로 송부한다. (개정 2016. 10. 27., 2021.03.31.)

제6장 위원회

제33조의3 [위원회]

(1)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로 정한다. (개정 2021. 3. 31.)

(3) (삭제 2021. 3. 31)

제33조의4 (삭제 2016. 10. 27.)

제33조의5 (삭제 2016. 10. 27.)

제33조의6 (삭제 2016. 10. 27.)

제7장 감사위원회 (본장전문개정 2021. 3. 31.)

제33조의7 [감사위원회의 구성]

- (1) 이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3) 감사위원회 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0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한다.
- (6) 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한다.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지 않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때에 제8항과 제9항을 적용한다.
- (7)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 (8)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선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9)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10)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33조의8 [감사위원회의 직무]

- (1)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4) 제3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6) 감사위원회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해야 한다.
- (7)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8)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7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및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며, 그 외의 직무 세부내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9)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10)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8장 계산 (본장제목개정 2016. 10. 27.)

제34조 [사업년도]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 (1)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10. 27.)
- (2)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의 설립등기일에 개시하여 도래하는 3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6. 10. 27.)

제35조 [회계장부 및 기록]

회사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반영한 완전한 회계장부 1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한 장부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제36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14.3.31)

(1)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가) 대차대조표

(나) 손익계산서

(다)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개정 2014.3.31)

(라)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나) 및 (다)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 (개정 2014.3.31)

(마) (삭제 2014. 3. 31)

(2) 감사위원회는 위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3) 대표이사는 제 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4) 대표이사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거친 제1항 (가) 내지 (라)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1항 중 영업보고서에 기재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3. 31.)

(5) 위 제4항에 명시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제36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신설 2021. 3. 31.)

(1) 외부감사인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한다.

(2)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혹은 변경 선임한 사실을 최초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 [이익금의 처분]

어느 사업년도의 이익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16. 10. 27.)

제38조 [이익배당] (본조제목개정 2016. 10. 27.)

(1) 이익배당은 매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 10. 27.)

(2) 이익배당은 그러한 배당금 승인을 한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의 배당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7.)

(3) 이익배당 지급 청구는 그러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5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개정 2016. 10. 27.)

(4) 회사는 이익의 배당을 신주로 할 수 있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배당으로 발행하는 신주식은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38조의2 [중간배당]

(1) 이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금전 또는 현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가)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나)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액

(라)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자본금의 액

(나) 당해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다)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라) 기타 상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5) 회사가 사업년도의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기해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을 자본전입한 경우, 주식배당을 한 경우 포함)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0. 27.)

제9장 보칙

제39조 (삭제 2012. 6. 15.)

제40조 [상법 및 보험업법의 적용]

본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안에 따라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상법 및 보험업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

제41조 [언어]

본 정관의 영문본과 국문본은 모두 정본이다. 단, 그 의미가 상치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부 칙

부 칙 (2012.6.15.)

제1조 [시행일]

의결일로부터 시행하되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6.25.)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주주총회 승인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 칙 (2014.3.31.)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27.)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8.)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26.)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제18조 및 제31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26일 이후 기존 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최초 이사회 의장 선임 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3.31.)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의 제18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3조의3, 제33조의7, 제33조의8, 제36조 및 제36조의2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31일 주주총회 승인 시부터 시행한다.

[첨부 2]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이사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 피용자 기타 회사의 구성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보고, 이사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구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03. 31.)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매년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할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6., 2021. 03. 31.)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03. 31.)

③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0. 10. 26., 2021. 03. 31.)

제3장 회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개정 2020. 10. 26)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7. 6., 2021. 03. 31.)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의 일시 24시간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③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각 회의 소집 통지 시 제공한다. 단,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2.)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2. 17.)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질서유지] (신설 2016. 10. 27.)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1. [별표]에서 정한 사항

2.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3. 관련법령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개정 2021. 03. 31.)

4.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03. 31.)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03. 31.)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위험)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03. 3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신설 2021. 03. 31.)

⑤ 감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위험)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각 선임한다. (신설 2021. 03. 31.)

⑥ 위원회는 그 결의로 사외이사 가운데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3. 31.)

⑦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의 일시 24시간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3. 31.)

⑧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신설 2021. 03. 31.)

⑨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03. 31.)

제12조 (삭제 2021. 03. 31.)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이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영문과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6. 10. 27., 2021. 03. 31.)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정한 자로 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6.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9.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10.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6.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의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26일 이후 기존 의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최초 이사회 의장 선임 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03.3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의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 개정사항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사회 부의사항

이사회 부의사항

구분	내용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1-3	영업보고서 승인
1-4	재무제표 승인
1-5	정관 변경
1-6	자본의 감소
1-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8	주식의 소각
1-9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1-10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1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14	주식배당 결정
1-15	이익배당 결정
1-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7	이사의 보수
1-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 주식병합, 주식분할
1-19	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2. 경영에 관한 사항	
2-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2-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2-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2-5	공동대표의 결정
2-6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2-7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2-8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단,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변경 등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규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에 의함) 1)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규정(위험관리기준) 2) 내부회계관리규정 3) 이사회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 4) 임원보수규정 및 임원퇴직급여규정 5) 지배구조내부규범 6) 최고경영자경영승계규정 7) 기타 이사회가 회사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한 규정
2-9	지점, 사무소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2-10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2-11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2-12	준법감시인 선임 및 해임
2-13	선임계리사 선임 및 해임
2-14	기타 중요 영업활동
2-15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2-16	위험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2-17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
2-18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3. 재무에 관한 사항	
3-1	투자에 관한 사항
3-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3-4	결손의 처분
3-5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3-6	신주의 발행
3-7	사채의 모집
3-8	준비금의 자본전입
3-9	전환사채의 발행
3-1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11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자기자본 20%이상의 자금차입 등)
3-12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3-13	보험업법 제 111 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자기자본의 1 천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10 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채권취득 등)
4. 이사에 관한 사항	
4-1	이사,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4-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4-3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4-4	이사의 타회사의 임원 겸임
4-5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간의 이행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4-6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
4-7	선임사외이사 선임 및 해임
4-8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4-9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4-11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4-12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5. 기타	
5-1	중요한 소송의 제기 또는 화해
5-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5-3	계약자 배당결정
5-4	중간배당 결정
5-5	재단과의 시장가격에 따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거래
5-6	라이나전성기재단에 대한 기부
5-7	재단과의 자산 무상양도 등에 대한 거래
5-8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첨부 3]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으로서,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주주와 보험계약자 및 그 밖의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사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3. “사외이사”란 지배구조법 제2조 제4호의 사외이사를 말한다.
4.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대주주”란 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6. “주요업무집행책임자”란 지배구조법 제8조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7. “준법감시인”이란 지배구조법 제25조의 준법감시인 말한다.
8. “위험관리책임자”란 지배구조법 제28조의 위험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 [공시] ①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지배구조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을 익년도 정기주주 총회일 20일 전부터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회사 및 생명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시 및 그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은 지배구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정 및 변경 등] 이 규범은 이사회 의결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의결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 실질적인 내용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전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감독규정, 정관, 이사회규정 등이 이 규범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구성 현황

제6조 [이사회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임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는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③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선임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이사회를 주재하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④ 의장이 불참하거나 회의의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이사회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최초 이사선임일자 순으로, 위선임일자가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그 사유를 공시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 ⑦ 회사 및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의 자격 요건

제8조 [이사의 자격요건] ① 이사는 상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금융, 보험, 경영 등 관련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갖춘 자로서 모범적인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을 가져야 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9조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외이사는 제8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금융, 경영, 경제, 법률, 회계, 소비자보호 또는 정보기술 등 금융회사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연구·조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외이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전체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한다.

제10조 [이사의 결격요건] ① 지배구조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되지 못하며, 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잃는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되지 못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제1호에 따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3.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근(常勤)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 또는 비상임이사이었던 사람

4. 회사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5. 회사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6. 회사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7.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사람

8. 그 밖에 회사의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회사의 사외이사가 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3절 이사회 및 이사의 권한과 책임

제11조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 금융소비자 등의 이익을 위해 상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세부사항은 정관 및 이사회규정으로 정한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2. 경영에 관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관계법령 및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및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관련법령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정한 사항
4. 기타 대표이사가 경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는 주주 및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12조 [이사회 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사회가 각 이사회 내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한 경우에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사외이사는 이사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사회 등이 회사, 주주 및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 등의 의안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하여야 한다.

⑦ 사외이사는 제6항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일정시간 이상을 이사회 등의 참여야 할애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이사의 책임문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유능한 이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⑨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외이사에 대한 정보제공] ① 회사는 사외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배구조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이사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15조 [이사 선임의 절차 및 임기] ① 이사는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외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며, 그 외 사내이사 등은 이사의 추천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려는 경우 그 재임기간 동안의 사외이사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이사는 본인을 이사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낙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하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임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제5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 퇴임의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가 만료된 경우
 2.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3. 감독당국으로부터의 제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해임되는 경우
 4. 형벌 등으로 인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사망, 불의의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유고 상황으로 이사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경우
- ② 이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않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외이사가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관련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이사회 의 소집절차 및 의결권 행사방법

제17조 [이사회 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이사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각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업무상 필요 시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소집권자에게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그 이사회 의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소집 통지에는 이사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명시한다.

⑤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⑥ 사외이사에 대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는 각 회의 소집 통지 시 제공한다. 단, 사외이사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회의 전일까지 회의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결의요건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연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관련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평가, 직원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③ 회사는 2년 이상 재임하는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최소 2년에 1회 이상 외부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제1항에서 실시한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이사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종류와 그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0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권한 및 소집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임하거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 후보의 추천
2. 기타 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⑥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단, 감사위원 후보 추천의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과 경영성과를 평가,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며, 감사위원 중 1인 이상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③ 감사위원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 가운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업무감사권
2. 이사 보고의 수령권
3.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
4.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5. 각종 소의 대표권
6.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
7. 전문가의 조력요청권
8.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권한
9.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회사 내 모든 정보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
10. 관계자의 출석 및 관련자료 제출 요구
11.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접근 및 봉인

12. 회계관련 거래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13. 제장부 증빙서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14. 기타 법령,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당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이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와 안건 관련자료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⑧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⑨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 ⑩ 기타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의결사항 및 심의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위원 중 1인 이상은 금융회사 또는 회사의 금융, 회계 또는 재무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위험관리기준 및 동 기준관련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 4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되는 위기상황분석결과 및 이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9.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10. 재보험 운영 전략 설정
 11.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및 전략적 자산배분(SAA) 수립
 12. 기타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중요사안의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 2인 이상 발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을 정하고,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 [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이하 본조에서 '위원회')는 임직원의 보수체계의 설계·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사외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의 임원(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수립 및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 3.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4.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 5.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제6항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일을 정하여, 소집목적, 일시, 장소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회의 일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단,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제25조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이사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연간 활동을 기준으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 절차와 지표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②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1절 임원의 자격요건

제26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 중 이사의 자격요건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 업무집행책임자 등 임원은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령을 따른다.

②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은 제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제26조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후에 동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④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하며, 위험관리책임자가 된 후에 동법 제28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7조 [임원의 결격요건] 이사인 임원의 결격 요건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임원의 권한 및 책임

제28조 [임원의 권한 및 책임] ① 이사인 임원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항은 제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며,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이 외 업무집행책임자는 회사경영과 관련하여 부여 받은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경영전략 수립 등 전략기획 업무
2. 재무, 예산 및 결산 회계 등 재무관리 업무
3. 자산의 운용 등에 대한 위험관리 업무
- ④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 ⑤ 위험관리책임자는 자산의 운영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 ⑥ 그 밖에 본 조에서 정하지 않은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절 임원의 선임과 퇴임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제29조 [임원의 선임 및 퇴임]** ① 이사인 임원의 선임 및 임기는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이사인 임원의 퇴임은 제16조에 따른다.
- ③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등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며,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유고 시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다만, 제4항의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26조 제1항 및 제28조 제3항에 따른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⑥ 이사가 아닌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처리 하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임기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임기 만료
 2. 사임
 3. 지배구조법, 관련법령, 정관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회사와의 위임계약 종료사유 발생
 4. 인사 기타 내부규정에 따른 면직
 5. 기타 임원으로서의 신분유지 및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 ⑦ 제1항에서 제5항까지의 임원을 제외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임기 및 유고 시 직무대행자 임면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절 임원 및 그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제30조 [임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신임 임원에 대하여 회사의 전략, 금융, 경영, 회계,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 또는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관련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아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 ② 회사는 재직중인 임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임원은 회사에서 정한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직원의 업적과 역량 등을 고려하여 임원 후보군을 선정하고, 임원 후보군 중 선발된 후보자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수과정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② 회사는 임원을 선임할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임원후보자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사의 교육규정 등에 따른다.

제5절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지급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32조 [임원 성과평가] ① 이사의 성과평가는 보수위원회에서 하며,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과는 대표이사가 평가한다.

② 사내이사에 대한 평가 기준은 수익성, 성장성, 경영효율 지표 등 계량적 평가 외에 필요 시 정성적 평가를 활용한다.

③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정량적인 평가와 비정량적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업무 성과와 잠재적 성장 가능성 등을 성과 측정 지표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자기평가, 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 평가로 나누어 매 결산기 종료 후 실시한다.

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경영성과와는 독립적인 지표 등 별도의 기준에 따라 성과평가 및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보수의 지급, 임면, 연임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3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의 보수는 기본보수와 성과보수 등으로 구성되며, 임원의 보수 중 성과보수는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된다. 다만,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사인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보수한도 내에서 위임계약서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개인별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며, 담당업무, 직급, 경영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개인별로 차등할 수 있다.

③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 체계 및 지급 방법 등은 보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보수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 내규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개별 위임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1절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원칙

제34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경영승계 계획에는 아래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2.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3.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4.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자격검증 등 관리 방법
5. 비상상황 발생 시 직무대행자 선정, 신임 후보 선임 등 비상계획

③ 이사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계획의 적정성을 최소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①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고경영자의 퇴임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에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로부터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보고 받아, 제39조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① 이사회는 경영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점부터 최단시일 내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이후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를 완료한다.

③ 불가피한 사유로 경영승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선임 시까지의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 회사운영 및 향후 최고경영자 선임 일정 등을 공시한다.

제37조 [비상상황시 경영승계 절차] ①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 등에 정한 순서로 최고경영자 직무를 대행한다.

② 최고경영자가 임기 중에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최고경영자가 건강상 이유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이상의 제재를 받아 직무수행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이하 '비상상황'이라 한다) 발생시, 이사회는 직무대행자를 지체 없이 지정하고,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비상상황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5조 제2항, 제36조에 준해서 절차를 진행하되,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여야 한다.

제2절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제38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① 회사는 이사회 운영 지원부서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지원하여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부서(이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라 한다)로 지정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시적인 최고경영자 후보군 발굴, 관리 및 평가·검증 업무
2.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업무 지원
3. 기타 최고경영자의 승계를 위해 필요한 업무 지원

②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는 최고경영자 후보 발굴 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후보군 중에서 1인 또는 2인 이상의 후보를 최고경영자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3절 최고경영자의 자격

제39조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① 최고경영자는 상법, 지배구조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임원의 요건 및 제8조에 명시된 이사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보험 및 금융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핵심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서, 리더십과 경영혁신 마인드, 직무윤리 등을 두루 갖춘 자, 또는 이사회가 최고경영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 최고경영자는 도덕성, 책임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판단력 등 최고경영자로서의 개인적 품성과, 장기 비전 및 방향을 제시하고 조직을 통합할 수 있는 경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4절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제40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후보 발굴 시 주주 및 이해관계자, 외부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예비후보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 및 제39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증한 후,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41조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한 평가와 검증 등 후보군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탐색, 발굴, 관리업무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신규 선발, 기존 후보의 유지 또는 퇴출을 통해 후보군을 확정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군에 대해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제42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최고경영자후보추천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 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절 책임경영체제 확립

제43조 [책임경영체제확립]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따른다.

-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회사 경영에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법령 및 회사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대표이사가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회사는 능력에 근거한 경영진의 선임, 역할의 명확화, 필요한 권한의 위임 등을 통하여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해임 및 퇴임사유 등을 명문화하여 운영한다.
- ⑤ 경영진의 임면을 위한 평가기준은 제32조, 선임 및 퇴임 기준은 제29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범은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